##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59

발의연월일: 2021. 10. 1.

발 의 자:추경호·김상훈·김선교

김용판 · 조명희 · 윤창현

김예지 • 이주환 • 성일종

백종헌 · 엄태영 · 이종배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다양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제 지원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서민과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4조의11제5항).

- 나.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4조의12제1항).
-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 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 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 제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 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1조의25제7항·제8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1제5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신용회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신용회
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	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 ④ (생 략)	산입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기관이 <u>2021년 12월 31</u>	⑤ <u>2024년 12월 31</u>
<u>일</u> 까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u>일</u>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u>.</u>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낮은 신용	대한 과세특례) ①
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	
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② ~ ⑤ (생 략)

-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 략)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 치세를 면제한다.
  - 1. · 2. (생략)
  - ① (생략)
-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 례) ① ~ ⑥ (생 략)
  - 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u>20</u> 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 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24년 12월 31일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①
2024년 12월 31일
1. • 2.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
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20</u>
24년 12월 31일

⑧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니	-에
해당하는	전신	<b>산용역</b>	으로서	1 20	)21
년 12월	31일	까지	공급청	하는	것
에 대해/	서는	부가	가치서	를	면
제한다.					
	/	-3.			

1. ~ 3. (생 략)

8
<u>2024</u>
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